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상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578

발의연월일: 2024. 8. 6.

발 의 자: 박상혁 · 김병기 · 박희승

유동수 • 노종면 • 정진욱

김현정 · 김한규 · 조승래

김성환 · 민병덕 · 이연희

박홍근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건전한 금융생활 지원 및 금융소비자의 금융 역량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장기화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, 장애인 등 금융생활에 취약한 사람들이 금융사기등의 피해를 입거나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, 금융소비자 중에서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취약계층의 보호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,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금융상품판 매업자등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,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내부통제 기준에 금융취약계층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과 금융피해 방지에 관 한 사항을 포함하게 하여 금융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29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 중 "장애"를 "연령 · 국적 · 재산 · 장애"로 한다.

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9조의2(금융취약계층의 보호) ① 금융위원회는 노인, 미성년자, 장애인, 외국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(이하 "금융취약계층"이라 한다)을 금융사기, 금융착취 등의 금융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 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부터 금융취약계층의 금융피해 사례 및 의심 사례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③ 제16조제2항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는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취약계층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과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고, 그 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5조(차별금지) -----제15조(차별금지) 금융상품판매업 자등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 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성 별・학력・장애・사회적 신분 ----연령·국적·재산·장애--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 여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 별해서는 아니 된다. 제29조의2(금융취약계층의 보호) <신 설> ① 금융위원회는 노인, 미성년 자, 장애인, 외국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(이 하 "금융취약계층"이라 한다)을 금융사기, 금융착취 등의 금융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금융취약 계층의 금융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 여야 한다.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부 터 금융취약계층의 금융피해 사례 및 의심사례에 관한 자료

-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제16조제2항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취약계층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과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고, 그 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실시하여야 한다.